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인비행장치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비행승인
시, 드론산업의 안전수준 향상 등에 기여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
에 대해서는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여 안전기
준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안전기준의 장비요건은 유사한 기
능을 갖춘 다양한 장비도 인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규정하는 한편,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 중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
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4조제2항)

신청서류 중 항공안전기술원장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우수사업자에 대한 안전기준 검사절차 간소화(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우수사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기준 검사를 생략하는 단서를 신설함

다. 특별비행승인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1항·제2항)

승인 신청이 종전의 비행계획과 동일한 경우 안전기준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함

라. 특별비행 안전기준 요건 완화(안 별표 1)

적외선카메라를 사용하는 시각보조장치, 서치라이트, 통신이중화, GPS 위치발신기 등의 장비요건을 기능 위주로 변경하고, 관찰자 배치 예외 요건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6. 7.(수)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215,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건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